

## 1. 개정이유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고, 그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종류 추가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정매개체를 추가함

나.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
- 다.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인근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절차 마련

-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 2)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라.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 마련

○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방법을 마련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도태 명령 범위·기준·방법 및 이행절차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26.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야생 조류”를 “물렁진드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정하는 역학조사관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시·광역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업무 수행,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관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별표1의7과 같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우역·우폐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도태의 명령)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명령은 별지 제10호2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몰기준”을 “매몰·화학적 처리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8을 별표 1의9로 하고, 별표 1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을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으로 한다.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별표 4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건강하지 못하여”를 “자돈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중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태권고대상”을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 대상”으로, “출하절차”를 “출하절차”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교부한”을 “교부한 때와 제2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교부한”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출하를 권고한 경우:”를 각각 “출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도태권고를”를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을”로 한다.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별표 4 제5호(종전의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도태사실”을 “도태 사실”로 하고, 같은 목 1) 중 “도태권고서의”를 “도태권고서 또는 도태명령서의”로, “도태권고서를”을 “도태명령서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도태권고서의”를 “도태권고서와 도태명령서의”로, “도태권고서를”을 “도태명령서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도태 방법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나목 중 “가축:”을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라 도축 후”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8]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제16조의3 관련)

1. 역학조사관 교육은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훈련(On-the-Job Training, OJT)으로 1회의 기본교육(3주)과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 및 발표 등으로 정한다.

2. 교육·훈련 내용

가. 기본교육: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가축전염병별 역학적 특성, 역학통계, 유행역학조사,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 등 역학조사, 역학농장 및 축산시설 등 조사, 위험도 평가, 가축전염병 예찰체계와 정보관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정책, 역학조사 기법(전화조사, 방역현장 면접조사, 환경 및 매개체 조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 활용한 조사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소독 등), 가축전염병 실험실 진단, 다양한 환경 시료채취 및 수송 등 역학조사 관련 이론 및 실습

나. 지속교육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대응, 가축전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조치,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 이론 및 실습 등 현안·사례 중심의 실무교육훈련

다. 역학조사분석보고서 제출 및 발표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3. 교육 이수 시간 : 기본교육 및 지속교육 등 제반 교육에 대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는 시간

##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 기준 · 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 가.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 · 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번식용 돼지
- 나.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 · 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 중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소
- 다. 추백리 또는 가금티프스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 · 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종계와 함께 사육된 종계
- 라. 그 밖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 · 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 2.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른 농가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가축
-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고역가(高力價) 항체가 검출된 번식용 돼지 중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른 농가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가축
- 다. 특정 지역에서 가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의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된 가축
- 라.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에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근 지역의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된 가축

마.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우역, 우폐역,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농장 또는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3.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

4. 영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으로서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자돈 등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5.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 절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와 제2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명령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도축장으로 출하한 경우 :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한 경우 :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도태권고 및 도태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다. 도태 사실의 확인

- 1) 도축장: 해당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은 도태권고서 또는 도태명령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명령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시설: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소속 가축방역관은  
도태권고서와 도태명령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명령서를 교부  
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 6. 도태 방법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른다.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라 도  
축 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도태명령서

제 호

|              |         |    |    |    |          |    |    |
|--------------|---------|----|----|----|----------|----|----|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    |    |          |    |    |
|              | 소재지     |    |    |    |          |    |    |
| 소유자<br>(관리자)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도태명령의<br>내용  | 도태 이유   |    |    |    |          |    |    |
|              | 대상 두수   |    |    |    | 이행기간     |    |    |
| 도태명령<br>대상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비고 |
|              |         |    |    |    |          |    |    |
| 도태지정<br>출하시설 | 시설(업체명) |    |    |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    |
| 준수사항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2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태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2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도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5의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② (생략)<br>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1. 가축에 <u>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u> 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u>야생 조류</u><br>2. (생략)                                 |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1. ----- <u>아프리카돼지열병</u><br>-----<br>-- <u>물렁진드기</u><br>2. (현행과 같음)                                                                                                       |
|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br>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신고대상 가축의 <u>소유자등</u> 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br>2. ~ 6. (생략)<br>② ~ ④ (생략)<br><u>&lt;신설&gt;</u> |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br>①-----<br>-----<br>-----<br>-----.<br>1. ----- <u>소유자등</u><br><u>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u> -----<br>-----<br>2. ~ 6.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br><u>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u><br>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정하는 역학조사관 중 <u>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u> |

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시·광역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업무 수행,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관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별표1의7과 같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⑥ (생 략)

제24조(도태의 권고) ①법 제21조  
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  
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

역기관장이 정한다.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  
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  
심되는 경우

2.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  
병이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  
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  
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4조(도태의 권고) ①-----  
-----  
-----  
-----  
-----.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

|                                                                                                                                                                                                                                                                                                                      |                                                                                                                                                                                                                                                                                                                                                                                                                                                                                                                               |
|----------------------------------------------------------------------------------------------------------------------------------------------------------------------------------------------------------------------------------------------------------------------------------------------------------------------|-------------------------------------------------------------------------------------------------------------------------------------------------------------------------------------------------------------------------------------------------------------------------------------------------------------------------------------------------------------------------------------------------------------------------------------------------------------------------------------------------------------------------------|
| <p><u>돼지열병</u></p> <p>2.·3. (생 략)</p> <p>②·③ (생 략)</p> <p>④<u>법 제21조제2항</u>(<u>법 제28조</u>에<br/>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br/>에 따른 도태권고대상 가축의<br/>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br/>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u>&lt;신 설&gt;</u></p> <p>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br/>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br/>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br/>각 또는 <u>매몰기준</u>은 별표 5와<br/>같다.</p> | <p><u>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u><br/><u>·우역·우폐역·고병원성</u><br/><u>조류인플루엔자</u></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u>법 제21조제3항</u>-----<br/>-----<br/>-----<br/>-----.</p> <p><u>제24조의2(도태의 명령) ① 법 제</u><br/><u>21조제2항에 따른 도태명령은</u><br/><u>별지 제10호2 서식에 따른다.</u></p> <p><u>②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u><br/><u>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br/><u>에 따른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u><br/><u>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u><br/><u>은 별표 4와 같다.</u></p> <p>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br/>준) -----<br/>-----<br/>----- <u>매몰·화학적 처리기</u><br/><u>준</u>-----<br/>-----.</p> |
|----------------------------------------------------------------------------------------------------------------------------------------------------------------------------------------------------------------------------------------------------------------------------------------------------------------------|-------------------------------------------------------------------------------------------------------------------------------------------------------------------------------------------------------------------------------------------------------------------------------------------------------------------------------------------------------------------------------------------------------------------------------------------------------------------------------------------------------------------------------|